

충청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5호

2026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제2회 수의직, 수의연구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의직, 수의연구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2026년 제2회 수의직, 수의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		8		
	6급	수의	수의	1	진천군 1
	7급	수의	수의	6	충청북도 4, 제천시 1, 보은군 1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1	충청북도 1

※ 비 고

- 1) ‘모집단위’란 ‘계급-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니,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최종합격한 사람은 임용예정기관에서 신규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2. 시험 방법

시 험 명	1차 시험	2차 시험	비 고
2026년 제2회 수의직, 수의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 비 고

-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3)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 4. <생략>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 포함)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없음 (전국모집)

라. 자격면허, 경력 등 응시자격(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응시자격
2026년 제2회 수의직, 수의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6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수 의	수 의	
	연구사	수 의 연 구	수 의	

※ 비 고

- 1) 자격·면허증 등의 유효(소지)여부는 자격·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시험 일정

시험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26년 제2회 수의직, 수의연구직 경력경쟁임용시험	2026. 9. 7.(월) 9:00 ~ 9. 11.(금) 18:00	서류전형	-	9. 18.(금)/9. 21.(월) 중	9. 23.(수)
		면접시험	9. 23.(수)	10. 1.(목)/10. 2.(금) 중	10. 6.(화)

※ 비 고

-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시험·채용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통보(문자, 전화 등)는 하지 않습니다.
- 2)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응시원서 접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
- 9. 7.(월) 09:00 ~ 9. 11.(금) 18:00 (취소는 9. 14.(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1522-0660)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제출서류 접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충청북도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충북도청 신관 7층**)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제출기간: 2026. 9. 7.(월) ~ 9. 16.(수)

- 방 문: 평일 근무시간(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중에만 접수
- 등 기: 마감일(2026. 9. 16.)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합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공통서류 6종, 수의6급 응시자 추가제출 서류2종

[공통서류]

- ① 응시원서 1부(인터넷으로만 접수)
- ②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수의6급 응시자 추가제출 서류]

- ⑦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수의)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관련분야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추가 제출
 - ※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연수 및 수습기간, 인턴기간, 현장조사, 단순업무보조는 인정되지 않으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경력(계약서, 급여내역, 실적, 급여 지급기관의 공문 등)이 없을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은 공적서류에 따라 경력증빙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응시수수료

1) 응시수수료: 7,000원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다자녀 확인절차 이후 반환)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원서접수 시 ‘면제 자격 조회’를 통해 실시간 주민등록 등본상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jy0316@korea.kr)로 제출하면 면제요건 확인 후 반환

2) 응시수수료의 환급: 다음의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취소마감일 내)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되며, 이는 반환되지 않음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기준
- 3) 원서접수 기간 중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이후에 모집단위(계급-직렬-직류-임용예정 기관 등)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4)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모집단위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그 밖의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라.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sihum>

그 밖의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인사혁신과(인재채용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 220-4734

붙임 수의6·7급, 수의연구사 응시자 서류제출 안내 1부. 끝.